

NEWS LETTER

2026-07-31

Legal Issue

- 불법 취득 개인정보도 보호 대상인가:개인정보처리자 개념의 확장과 정보주체 보호 공백 해소
- AI 개발 계약은 SW 개발 계약과 달리 접근해야 한다

MINWHO News

- 양진영 대표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ESG 세미나 토론 좌장 참여
- 양진영 대표변호사, 방송기자연합회 주관 '데스크 AI 활용과정' 교육 진행

Business CASE



Legal Issue

불법 취득 개인정보도 보호 대상인가:개인정보처리자 개념의 확장과 정보주체 보호 공백 해소

김경환 대표변호사

최근 대법원 판결(2026. 4. 16. 선고 2026도477 판결)은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서 간과되기 쉬운 법적 사각지대를 엄중히 짚어냈다는 점에서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킹이나 불법 유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무상 이용하는 자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정보 취득 과정이 해킹이나 불법 유통 등 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라면 해당 법령의 규제를 받는 처리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문의 문언과 체계를 면밀히 고찰한 결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성립 요건에 '취득 경위의 적법성'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데이터의 출처가 비도덕적이거나 불법적이라 할지라도 이를 업무 목적으로 체계화해 운용하고 있다면 법적 수범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만약 해킹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은 자를 처리자에서 제외한다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각종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을 알려야 하고(제20조 제1항),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제35조 제1항)나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제36조, 제37조)에 응할 의무가 있다. 또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보호의 공백'이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며, 오히려 정보주체의 권익을 더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 취득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번 판결은 죄수 관계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범위를 초과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가 서로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을 가진다고 봤다. 비록 원심이 이를 특별관계로 보아 한 가지 죄만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불법적인 정보 처리에 대해 보다 촘촘한 처벌망을 구성해야 함을 시사했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 판단 기준을 '권원의 정당성'이 아닌 '처리의 실태'에 두어야 함을 확정했다. 특히 다크웹이나 해킹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행위가 단순히 취득 단계의 불법성을 넘어, 이후의 이용 및 제공 행위 전반에 걸쳐 엄중한 형사책임의 대상이 됨을 선언한 것이다.

앞으로 기업은 보유한 데이터의 수집 경위가 불투명하더라도, 해당 데이터를 운용하는 순간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모든 수범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라는 사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에서 불법의 산물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존엄과 가치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2-3425
oalmephaga@minwho.kr

Legal Issue

AI 개발 계약은 SW 개발 계약과 달리 접근해야 한다

김경환 대표변호사

많은 기업이 외부 전문 인공지능(AI) 개발사와 손을 잡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SW) 개발 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나, AI 개발은 일반적인 SW 외주 개발과 본질적으로 구조가 다르다. 일반 SW가 기획된 기능에 맞추어 소스코드를 작성하는 일방향적 작업이라면, AI 개발은 원천 데이터의 정제, 학습 알고리즘의 결합, 그리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최적의 가중치(Weight)를 찾아내는 복합적인 프로세스다.

AI 개발 계약은 크게 네 가지 요소, 즉 기존 보유 기술(Background IP), 투입 데이터, 최종 학습 완료 모델(가중치), 그리고 파생 기술로 쪼개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개발사의 범용 엔진과 기본 알고리즘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해주되, 우리 기업이 제공한 핵심 도메인 데이터와 이를 통해 학습된 '최종 특화 모델(Customized Model)'의 소유권 및 독점권은 반드시 기업에 귀속시켜야 한다. 특히 AI의 성능을 좌우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독점적 접근 및 수정 권한이 기업에 귀속됨을 계약 서상에 명확히 컴포넌트 단위로 분리해 명시해야 한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데이터의 가공 및 피드백 효과'에 대한 권리 확보다. 기업이 원천 데이터를 개발사에 제공하면, 개발사는 이를 AI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정제하고 라벨링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가공 데이터는 그 자체로 엄청난 자산 가치를 지닌다. 또 개발 과정에서 우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보여주는 오류 수정 프로세스나 고도화된 방법론은 개발사에 일종의 '학습 효과'를 제공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공한 데이터 덕분에 개발사의 기술력이 업그레이드되는 셈이다. 만약 이를 방치하면 개발사는 우리 데이터로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 고스란히 경쟁사의 AI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계약서에 '본 프로젝트를 위해 가공된 데이터의 소유권은 발주사에 있으며, 개발사는 본 계약 목적 외에 이를 다른 학습에 재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노출할 수 없다'는 강력한 보안 및 재사용 금지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업계의 경쟁사에게 유사한 AI 모델을 개발·납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쟁 금지 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세 번째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제3자 권리 침해'에 대한 리스크 관리다. 현재 대부분의 AI 개발은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나 기존에 공개된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변형 및 파인튜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오픈소스 라이선스 중에는 전체 소스코드를 대중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독소 조항(GPL 등)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모른 채 개발사가 만든 AI를 기업의 핵심 서비스에 탑재했다가, 추후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면 기업 이미지와 매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따라서 계약서에 '개발사는 본 결과물에 사용된 모든 오픈소스의 목록과 라이선스 조건을 발주사에 사전 고지해야 하며, 상용화에 제약이 없는 라이선스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담보 조항을 넣어야 한다. 더불어 개발사가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제3자의 저작물을 크롤링해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비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시 모든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은 개발사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면책 조항을 촘촘하게 구성해야 한다.

기술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없이 기존의 일반 SW 외주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재활용하는 것은 기업을 법적 공백 상태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AI의 구성 요소를 명확히 분리하는 정밀한 계약 설계만이 기술 도입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2-3425
oalmephaga@minwho.kr

MINWHO NEWS

양진영 대표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ESG 세미나 토론 좌장 참여

양진영 대표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ESG 세미나 토론 좌장 참여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위원장)는 지난 6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된 'ESG는 지속가능한가' 세미나에서 토론 좌장을 맡아 ESG를 둘러싼 주요 현안과 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최한 행사로, ESG를 둘러싼 최근의 변화와 기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과제를 살펴보고, 지속가능경영 환경에서 법률가의 역할과 책임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ESG의 등장 배경과 최근 변화, 기업의 제도 구축 비용, 기후위기 및 공급망 관리에 따른 법적 책임, 기업 지배구조의 중요성,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등 기업 실무와 밀접한 다양한 주제가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

양진영 대표변호사는 토론 좌장으로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이끌며 ESG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실무적 시사점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ESG를 둘러싼 최근의 변화와 기업의 실무적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앞으로도 다양한 학술 활동과 전문 강연을 통해 기업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전달해 나가겠습니다.

MINWHO NEWS

양진영 대표변호사, 방송기자연합회 주관 '데스크 AI 활용과정' 교육 진행

양진영 대표변호사, 방송기자연합회 주관 '데스크 AI 활용과정' 교육 진행

생성형 AI가 언론 현장의 취재·편집·제작 업무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AI 활용에 따른 법적·윤리적 기준을 이해하는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지난 6월, 방송기자연합회가 주관한 '데스크 AI 활용 과정'에 강연자로 참여하여, 현직 방송 기자와 언론사 데스크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관련 윤리적 문제 및 대응'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2025년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을 비롯한 최신 제도 변화와 함께, 언론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법률 이슈를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정보의 신뢰성 확보 방안, 데이터 편향과 환각 문제,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와 관련된 법적 책임, 개인정보와 인격권 보호, AI 학습데이터 및 생성물에 관한 저작권 쟁점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해외 주요 언론사의 AI 운영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며, 언론 현장에서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실천 방안도 공유했습니다. AI를 기사 작성의 보조 도구로 활용하되 최종적인 사실 확인과 편집 책임은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는 점, AI 활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투명성 확보, 내부 AI 활용 기준과 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습니다.

Business CASE

이달의 주요 업무사례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개인정보 처리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피의자(의뢰인) 대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도출
2.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 금융 인증 시스템 아이디어 도용 주장 사건에서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승소
3. 정보통신망침해 무죄 - 내부 관리자 계정 접근권한 인정 사건 피고인 대리, 항소심 무죄 판결 이끌어 승소
4. 전직금지가처분 - 이직 후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유출 의혹에 따른 가처분 신청 사건서 채무자 대리, 전부 기각 승소
5. 업무방해 고소 - 경쟁업체의 허위 리뷰 게시 및 상품형태 모방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 구 약식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6.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경위 및 산정 기준 확인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 자문
7. PG사 정산대금 차감 부도반환 조치의 적법성 및 카드사 책임 전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약관 규제 관련)
8. 로고 유사성 관련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응한 내용증명 회신 법률자문
9. 저작권 법률자문 - 웹툰 저작권자 기업의 AI 기술 활용한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의 영상저작물성 및 전자유통권과의 충돌가능성
10. 개인정보 국외이전 구조에 대한 동의 기반 법적 리스크 검토 및 계약 설계 자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 타워 역삼 11층

Tel. +82-2-532-3483 Fax. +82-2-532-3486

www.minwho.kr



[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주요 업무사례 바로가기]



[전화 상담 바로가기]



[카톡 상담 바로가기]



[홈페이지 상담 바로가기]



[이메일 상담 바로가기]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민후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및 소식 자료로, 모든 법률적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민후에 있으므로, 무단 배포, 복사, 게재를 금합니다.